



**제 552호 2023. 4. 6(목)**

**입법예고**

제2023-1614호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4760

**고 시**

제2023-91호 김해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여래공원) 결정(변경), ..... 34784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제2023-92호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여래공원)사업 ..... 34791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제2023-93호 김해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고시 ..... 34794

제2023-96호 김해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34795

제2023-98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2, 소로1-36호선)사업 ..... 34799  
 실시계획 고시

**공 고**

제2023-1629호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 34809  
 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제2023-1649호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임대조건) 현황 공고 ..... 34810

제2023-1669호 김해도시계획시설(시설:완충녹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 34817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6일  
김 해 시 장

###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용도 추가 사항, 관계부서 건의 사항, 그 밖에 조례의 운영상 필요한 용어 수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완화 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 공공임대주택 비율(안 제15조의3)
  -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액 산정 및 분할납부 기준 (안 제15조의3)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대상 지역(안 제58조의2)
  -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용도지역 추가(안 제52조)
  -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개정사항 반영(안 제61조)
  -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안 제63조)
  -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수리점 및 유기농업자재공장 등 허용(안 별표 18)
  -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점 허용(안 별표 21)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 분류 신설 사항 반영
  -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전기자동차 충전소) 반영 (안 별표 14, 별표 17, 별표 18, 별표 21)
- 민원 건의 사항 반영(안 제20조)  
기존 종교집회장 평균경사도 기준 완화
- 그 밖에 조문 내용 명확화 및 법령명 변경 사항 반영 (안 제29조의2, 제65조, 제77조,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3, 별표 23, 별표 24)

### 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참조:도시계획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 우편(50924)/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 2)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  
(전화 : 055-330-3594, FAX:055-330-3589, E-Mail : deca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FAX, 직접방문 등

###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도시계획과 담당자 이승철(전화: 055-330-359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개정안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출연월일 : 2023. 4 . .

번호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용도 추가 사항, 관계부서 건의 사항, 그 밖에 조례의 운영상 필요한 용어 수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완화 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 공공임대주택 비율(안 제15조의3)
  -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액 산정 및 분할납부 기준 (안 제15조의3)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대상 지역(안 제58조의2)
  -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용도지역 추가(안 제52조)
  -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개정사항 반영(안 제61조)
  -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안 제63조)
  -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수리점 및 유기농업자재공장 등 허용(안 별표 18)
  -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점 허용(안 별표 21)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 분류 신설 사항 반영
  -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전기자동차 충전소) 반영 (안 별표 14, 별표 17, 별표 18, 별표 21)
- 민원 건의 사항 반영(안 제20조)
  - 기존 종교집회장 평균경사도 기준 완화
- 그 밖에 조문 내용 명확화 및 법령명 변경 사항 반영 : (안 제29조의2, 제65조, 제77조,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3, 별표 23, 별표 24)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2조의2, 제75조의3, 제7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46조의2, 제59조의2, 제70조의14, 제79조, 제84조, 제85조, 별표 1의2,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5, 별표 17, 별표 18, 별표 19, 별표 2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예산관련: 해당없음(붙임1 참조)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해당없음
  - 규제사진심사(법무담당관):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수하도록 하고, 위원의 위촉분야에 성인지 정책 분야를 추가하도록 협의하였으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명·위촉에 관하여 개정되는 시기에 반영토록 하고자 함.
- 입법예고: 2023. 4. 6. ~ 4. 26.
- 조례·규칙심의회: 2023. 5.

[붙임1]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비용추계 제외 대상)

**3. 미첨부 사유**

개정안 시행에 따른 예산 수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이수용
연락처	055)330-3580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의3의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기반시설 확보)”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설치에 우선 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의3제1항제4호 중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반시설 설치비용의”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으로, “준용한다”를 “준용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의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④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받거나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⑤ 영 제46조제1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단,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⑥ 영 제46조의2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 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를 말한다.
- ⑦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현금납부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교집회장으로서 아래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
  - 나. 기존의 종교집회장임을 입증 가능(시행일 이전 우리 시로 소재지가 기재된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교단·종파증명서 중 1부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의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개발행위허가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개발행위허가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하며,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서면협의(전자문서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으로 한다.  
제58조의2의 제목“(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를“(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로 한다.

제5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5조의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건폐율은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8조의2제2호 중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1호 중 “가공·처리시설(시)”를 “가공·처리시설[시 또는 시와 연결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를 “(시 또는 시와 연결한 시·군·구)”로 한다.

제63조의 제목“(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을“(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영 제85조제6항”을 “영 제85조제6항”으로 한다.

①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제65조제1항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른 시장에게 위임된”을 “법 제30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3, 별표 14, 별표 16, 별표 17, 별표 18, 별표 21 및 별표 2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4를 삭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 건축허가를 신청, 허가, 승인받았으면 중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7] <현 행>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7호 관련)

① 영 별표 8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7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내에 부분적으로 저축되는 대지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포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에 부분적으로 저축되는 대지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포함)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금은세공업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 <개정안>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7호 관련)

① 영 별표 8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70미터 이상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상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위락시설은 제외한다]

②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금은세공업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8] <현 행>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8호 관련)

- ① 영 별표 9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7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내에 부분적으로 저촉되는 대지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포함)하는 것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에 부분적으로 저촉되는 대지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포함)하는 것은 제외한다]
- ②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유독물 보관·저장 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나목의 소매시장에 설치하는 주유소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8] <개정안>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8호 관련)

- ① 영 별표 9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70미터 이상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상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위락시설은 제외한다]
- ②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유독물 보관·저장 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나목의 소매시장에 설치하는 주유소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9] <현 행>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9호 관련)

① 영 별표 10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7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내에 부분적으로 저축되는 대지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포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에 부분적으로 저축되는 대지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포함)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근린상업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유독물 보관·저장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9] <개정안>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9호 관련)

① 영 별표 10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70미터 이상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상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위락시설은 제외한다]

②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근린상업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유독물 보관·저장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현 행>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0호 관련)

- ① 영 별표 11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라 유통상업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7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내에 부분적으로 저축되는 대지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포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에 부분적으로 저축되는 대지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포함)하는 것은 제외한다]
- ②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유통상업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유독물 보관·저장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개정안>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0호 관련)

- ① 영 별표 11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라 유통상업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70미터 이상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상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위락시설은 제외한다]
- ②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유통상업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유독물 보관·저장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3] <현 행>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3호 관련)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 시설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3] <개정안>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3호 관련)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 시설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 <현 행>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4호 관련)

- ① 영 별표 1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 한다.
- ②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가목은 개별 입지하는 개발행위의 규모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라목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 <개정안>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4호 관련)

- ① 영 별표 1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 한다.
- ②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가목은 개별 입지하는 개발행위의 규모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라목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연 행>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6호 관련)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 상수도가 보급되고 하수도가 설치되며 폭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거나, 그 도로에서 연결되는 「건축법」에 따른 폭 6미터(실제 차량통행에 이용되는 도로 너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일반음식점과 아목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 조 제4호,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농업인, 생산자 단체,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같은 조 제5호,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어업인, 생산자 단체, 후계수산업경영인 및 전업수산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 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제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마목(15개 이상의 업체가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사목(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에 한정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6] <개정안>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6호 관련)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 상수도가 보급되고 하수도가 설치되며 폭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거나, 그 도로에서 연결되는 「건축법」에 따른 폭 6미터(실제 차량통행에 이용되는 도로 너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일반음식점과 아목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 조 제4호,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농업인, 생산자 단체,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같은 조 제5호,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어업인, 생산자 단체, 후계수산업경영인 및 전업수산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 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제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마목(15개 이상의 업체가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사목(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에 한정한다),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7] <현 행>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7호 관련)

- ① 영 별표 18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 한다.
- ②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가목은 개별 입지하는 개발행위의 규모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2015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및 2018년 3월 9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적합한 축사는 허용한다.  
나. 도시지역내 기존 축사(등록/허가)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 1) 현대화사업을 시행할 경우
    - 2) 기존 부지면적의 1.5배 이내인 경우
    - 3) 기존 건물을 철거(멸실)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 신축하는 경우(신축 건축물 준공 전 기존 건축물 철거)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중 나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다만, 라목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별표 17] <개정안>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7호 관련)

- ① 영 별표 18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 한다.
- ②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가목은 개별 입지하는 개발행위의 규모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2015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및 2018년 3월 9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적합한 축사는 허용한다.  
나. 도시지역내 기존 축사(등록/허가)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 1) 현대화사업을 시행할 경우
    - 2) 기존 부지면적의 1.5배 이내인 경우
    - 3) 기존 건물을 철거(멸실)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 신축하는 경우(신축 건축물 준공 전 기존 건축물 철거)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중 나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다만, 라목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8호 관련)

- ① 영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다.
- ②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을 제외한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및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나목, 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 1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 중 목재를 이용한 연료화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8호 관련)

- ① 영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다.
- ②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에 한정한다) 및 차목(단, 차목은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 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들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 도정공장  
나. 식품공장  
다.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라. 천연식품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나목, 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 1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 중 목재를 이용한 연료화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표 21] <현 행>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20호 관련)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농림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 및 폐기물재활용시설(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것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 <개정안>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20호 관련)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농림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아목 및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차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 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 및 폐기물재활용시설(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것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22호 관련)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어업인, 후계수산업경영인 및 전업수산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첨단업종의 공장은 기존에 입지된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및 제재업의 공장을 제외한 공장을 첨단업종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기존의 첨단업종 공장을 기존부지에서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22호 관련)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어업인, 후계수산업경영인 및 전업수산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첨단업종의 공장은 기존에 입지된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및 제재업의 공장을 제외한 공장을 첨단업종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기존의 첨단업종 공장을 기존부지에서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4] <현 행>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23호 관련)

영 별표 27 제2호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과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영 별표 19 제2호 자목 및 별표 20 제2호카목의 공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매매장,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별표 24] <삭 제><개정안>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확보) <u>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다목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2. (생 략)</p> <p>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기반시설 확보) ① <u>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 3. (생 략)</p> <p>4. <u>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u></p> <p>5. (생 략)</p> <p>② <u>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 기반시설 설치내용 및 설치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할 것</u></p> <p>2. <u>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제57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u></p> <p>3. <u>구체적인 운영기준 등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p>③ <u>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인 관리·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설치비용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u></p> <p>&lt;신 설&gt;</p>	<p>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확보) <u>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2.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① <u>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설치에 우선 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성장관리계획구역</u></p> <p>5. (현행과 같음)</p> <p>② <u>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u> ----- -----.</p> <p>1. ----- ----- <u>공공시설등의</u> ----- ----- -----</p> <p>2. <u>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u> ----- <u>준용할 것</u></p> <p>&lt;삭 제&gt;</p> <p>③ <u>제2항의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p>④ <u>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받거나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u></p>



<신 설>

<신 설>

<신 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삭 제

②·③ (생 략)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는 평균 경사도를 21도 미만으로 한다.

1. 2. (생 략)

<신 설>

<신 설>

제52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⑤ 영 제46조제1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단,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⑥ 영 제46조의2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 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를 말한다.

⑦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현금납부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교집회장으로서 아래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  
나. 기존의 종교집회장임을 입증 가능(시행일 이전 우리 시로 소재지가 기재된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교단·종파증명서 중 1부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의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개발행위허가 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개발행위허가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하며,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서면협의(전자문서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2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생략)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나. (생략)

제58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6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생략)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6.1, 개정 2016.10.14.)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생략)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신설>

영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  
-----  
-----.

1. (현행과 같음)
2. ----- ·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  
-----

가.나.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건폐율은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제6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가공·처리시설[시 또는 시와 연결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한정한다] -----
2. (현행과 같음)
3. -----  
----- (시 또는 시와 연결한 시·군·구)-----

제63조(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② 영 제85조제6항-----  
-----.

1. ~ 3. (현행과 같음)
4. -----  
-----  
----- 한정한다) : -----  
-----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이 하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7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른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를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  
----- 재개발사업  
----- 및 재건축사업-----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김해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여래공원)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여래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25조, 제88조, 제9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4월 6일

김 해 시 장

### 1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1	여래 공원	근린공원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본산리, 신용리 일원	237,667	감) 44	237,623	1977.08.29.	

-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1	여래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원면적 변경 - A=237,667m<sup>2</sup> ⇒ 237,623m<sup>2</sup> (감 44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공원면적 변경</li> </ul>

- 지형도면 : 게재생략

②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 총괄표

구분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면적		237,667	감)44	237,623	
시설면적 계		67,967	증)17	67,984	기정 시설률 28.6% 변경 시설률 28.6%
건축 규모	건축면적	1,987.82	-	1,987.82	기정 건폐율 0.84% 변경 건폐율 0.84%
	연면적	2,482.23	-	2,482.23	기정 용적률 1.04% 변경 용적률 1.04%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1	여래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및 광장 - 도로 : 12,829m<sup>2</sup> ⇒ 12,831m<sup>2</sup> (증 2m<sup>2</sup>)</li> <li>교양시설 - 6차산업관 : 2,329m<sup>2</sup> ⇒ 2,336m<sup>2</sup> (증 7m<sup>2</sup>) - 스마트가든 : 2,712m<sup>2</sup> ⇒ 2,720m<sup>2</sup> (증 8m<sup>2</sup>)</li> <li>녹지 - 녹지 : 169,700m<sup>2</sup> ⇒ 169,639m<sup>2</sup> (감 61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공원시설 면적 변경 반영을 위한 공원조성계획의 변경</li> </ul>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부지면적(m <sup>2</sup> )			건축규모(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면적	237,667	감)44	237,623	1,987.82	-	1,987.82	2,482.23	-	2,482.23	
공원시설	67,967	증)17	67,984	1,987.82	-	1,987.82	2,482.23	-	2,482.23	
도로 및 광장	19,313	증)2	19,315	-	-	-	-	-	-	
조경시설	6,610	-	6,610	-	-	-	-	-	-	
휴양시설	2,398	-	2,398	350.00	-	350.00	350.00	-	350.00	
교양시설	36,679	증)15	36,694	1,606.96	-	1,606.96	2,101.37	-	2,101.37	
편익시설	2,967	-	2,967	30.86	-	30.86	30.86	-	30.86	
녹지	169,700	감)61	169,639	-	-	-	-	-	-	

○ 세부시설조사

(1) 도로 및 광장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19,313	-	-	-	
변경	소계			19,315				
기정		도로	-	12,829	-	-	-	
변경		도로		12,831				
기정		광장	-	6,484	-	-	-	
기정	0-1	프로그램광장	신용리 산36-2임	5,017	-	-	-	
기정	0-2	특산물홍보마당	신용리 466전	1,467	-	-	-	

(2) 조경시설 (변경없음)

(3) 휴양시설 (변경없음)

(4) 교양시설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36,679	1,606.96	2,101.37	-	
변경	소계			36,694	1,606.96	2,101.37	-	
기정	5-1	감나무체험장	신용리 산36-1임	7,552	-	-	-	
기정	5-2	6차산업관	여래리 산5임	2,329	391.74	634.34	지상2층	
변경	5-2	6차산업관	여래리 산5임	2,336	391.74	634.34	지상2층	
기정	5-3	스마트가든	여래리 10답	2,712	1,045.22	1,297.03	지하1,지상1	
변경	5-3	스마트가든	여래리 10답	2,720	1,045.22	1,297.03	지하1,지상1	
기정	5-4	산딸기농원	신용리 산36-3임	3,599	-	-	-	
기정	5-5	단감농원	신용리 산36-3임	2,583	-	-	-	
기정	5-6	팔도단감원	신용리 산36-1임	9,217	-	-	-	
기정	5-7	장군차밭	신용리 산36-1임	2,464	-	-	-	
기정	5-8	전통체험장	신용리 산36-1임	1,051	170.00	170.00	지상1층	
기정	5-9	가족단감원	신용리 산35임	4,665	-	-	-	
기정	5-10	곶감체험장	신용리 산36-5임	507	-	-	-	

(5) 편익시설 (변경없음)

(6) 녹지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부지면적(㎡)	건축규모(㎡)		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169,700	-	-	-	
변경	소계			169,639	-	-	-	
기정	-	녹지	전지역	169,700	-	-	-	
변경	-	녹지	전지역	169,639	-	-	-	

○ 도로조서

(1) 도로조서 총괄표 (변경)

구분	폭원	노선수(노선)		연장(m)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3	23	4,807	4,807	12,829	12,831	
소로	소계	3	3	643	643	4,184	4,186	
	4.0	2	2	250	250	1,119	1,119	
	7.0~9.5	1	1	393	393	3,065	3,067	
세로	소계	20	20	4,164	4,164	8,645	8,645	
	1.5	12	12	2,642	2,642	4,299	4,299	
	1.5~3.0	2	2	452	452	874	874	
	2	1	1	14	14	28	28	
	3	4	4	1,039	1,039	3,381	3,381	
	3.5	1	1	17	17	63	63	

(2) 세부도로조서 (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4,795	12,829	-	-	-	
변경	합 계				4,795	12,831	-	-	-	
기정	소계(소로)				643	4,184	-	-	-	
변경	소계(소로)				643	4,186				
기정	소로		1	7.0~9.5	393	3,065	진입도로	남측경계	주차장B	
변경	소로		1	7.0~9.5	393	3,067	진입도로	남측경계	주차장B	
기정	소로		2	4	178	810	연결로	소로1	산딸기농원	
기정	소로		3	4	72	309	연결로	소로1	소로2	
기정	소로(세로)				4,164	8,645	-	-	-	
변경	소로(세로)				4,164	8,645	-	-	-	
기정	세로		1	1.5~3.0	50	118	산책로	소로2	장미정원	
기정	세로		2	3	661	2,180	산책로	소로2	화장실	
기정	세로		3	3	60	199	산책로	세로1	세로2	
기정	세로		4	3	207	660	산책로	세로2	세로2	
기정	세로		5	1.5	68	121	산책로	세로2	세로14	
기정	세로		6	1.5	65	119	산책로	세로2	세로14	
기정	세로		7	1.5	81	124	산책로	세로2	해먹전망대	
기정	세로		8	1.5	188	324	산책로	스마트가든	세로7	
기정	세로		9	1.5	510	830	산책로	쉼터	단감전망대	
기정	세로		10	1.5~3.0	402	756	산책로	북측경계	세로9	
기정	세로		11	2	14	28	산책로	쉼터7	북측경계	
기정	세로		12	3.5	17	63	연결로	소로2	동측경계	
기정	세로		13	1.5	272	408	산책로	해먹전망대	단감전망대	
기정	세로		14	1.5	632	1,018	산책로	단감전망대	북측경계	
기정	세로		15	1.5	170	276	산책로	소로2	산딸기농원	
기정	세로		16	1.5	152	230	산책로	세로15	감로원	
기정	세로		17	1.5	95	158	산책로	세로2	세로16	
기정	세로		18	3.0	111	342	산책로	감로원	서측경계	
기정	세로		19	1.5	297	518	산책로	세로18	세로5	
기정	세로		20	1.5	112	173	산책로	세로2	세로2	



③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산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여래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김해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시설 결정(m <sup>2</sup> )		금회시행 면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근린공원 (여래공원)	237,667	237,623	36,900	36,877	김해시 고시 제2022-215호 (2022.07.2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시장(농식품유통과장)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5. 사업기간 : 2020.06.26. ~ 2023.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불임
7. 실시계획(변경) 신청사유
  -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T.055-330-3595)에 비치】

#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사

※ 토지조사(기정)

일련번호	토지소재	편입용지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비고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여래리	산4 - 3	임	1,219	26	김해시					
2	여래리	산4 - 2	임	760	459	김해시					
3	여래리	885 - 2	구	172	172	국토교통부					
4	여래리	산5	임	22,512	1,726	기획재정부					
5	여래리	10	답	1,134	1,005	김해시					
6	여래리	9	답	118	118	김해시					
7	여래리	2	전	86	86	김해시					
8	여래리	9 - 1	전	833	833	김해시					
9	여래리	3	전	460	460	김해시					
10	여래리	3 - 1	전	516	207	심*술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				
11	여래리	883	구	926	743	국토교통부					
12	신용리	산36 - 7	임	198	95	김해시					
13	신용리	471	전	836	836	김해시					
14	신용리	719	도	409	409	국토교통부					
15	신용리	산36 - 2	임	3,570	2,583	김해시					
16	신용리	470	전	1,226	1,226	김해시					
17	신용리	469	전	188	188	김해시					
18	신용리	산36 - 5	임	5,455	1,202	김해시					
19	신용리	산36 - 1	임	26,876	1,408	김해시					
20	신용리	468	답	2,608	2,608	김해시					
21	신용리	산36 - 3	임	6,446	6,303	김해시					
22	신용리	466	전	5,508	5,508	김해시					
23	신용리	717	구	2,659	229	농림축산식품부					
24	신용리	473	전	155	155	송*일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				
25	신용리	475 - 1	유	2,213	20	농림축산식품부					
26	신용리	474	유	81	66	농림축산식품부					
27	신용리	718	도	481	481	국토교통부					
28	신용리	산38 - 2	도	5,496	740	국토교통부					
29	신용리	472	전	666	666	김해시					
30	신용리	472 - 1	도	80	80	국토교통부					
31	신용리	472 - 2	도	8	8	국토교통부					
32	여래리	산8	임	481	481	김해시					
33	여래리	산8 - 1	도	3,016	568	국토교통부					
34	여래리	4	답	719	719	정*찬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 * * * 맨션 * * * 호				
35	여래리	4 - 1	도	567	457	국토교통부					
36	여래리	5	도	347	229	국토교통부					
37	여래리	8	전	156	156	김해시					
38	여래리	9 - 2	도	2,397	1,025	국토교통부					
39	여래리	884	도	47	47	국토교통부					
40	여래리	11	답	664	664	김해시					
41	여래리	43 - 1	도	2,645	756	국토교통부					
42	여래리	884 - 1	도	94	94	김해시					
43	여래리	42 - 1	답	766	766	김해시					
44	여래리	42 - 7	답	147	16	김해시					
45	여래리	42 - 6	답	268	268	김해시					
46	여래리	884 - 2	도	8	8	국토교통부					

※ 토지조서(변경)

일련번호	토지소재	편입용지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비고
		지번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여래리	산4 - 3	임	1,219	26	김해시					
2	여래리	산4 - 2	임	760	459	김해시					
3	여래리	885 - 2	구	172	172	국토교통부					
4	여래리	산5	임	20,765	-	기획재정부					
4-1	여래리	산5 - 1	임	650	650	기획재정부					
4-2	여래리	산5 - 2	임	749	749	기획재정부					
4-3	여래리	산5 - 3	임	348	348	기획재정부					
5	여래리	10	답	1,134	1,005	김해시					
6	여래리	9	답	118	118	김해시					
7	여래리	2	전	86	86	김해시					
8	여래리	9 - 1	전	833	833	김해시					
9	여래리	3	전	460	460	김해시					
10	여래리	3 - 1	전	516	207	김해시					
11	여래리	883	구	214	52	국토교통부					
11-1	여래리	883 - 1	구	647	647	국토교통부					
12	신용리	산36 - 7	임	198	95	김해시					
13	신용리	471	전	836	836	김해시					
14	신용리	719	도	409	409	국토교통부					
15	신용리	산36 - 2	임	3,570	2,583	김해시					
16	신용리	470	전	1,226	1,226	김해시					
17	신용리	469	전	188	188	김해시					
18	신용리	산36 - 5	임	5,455	1,202	김해시					
19	신용리	산36 - 1	임	26,876	1,408	김해시					
20	신용리	468	답	2,608	2,608	김해시					
21	신용리	산36 - 3	임	6,446	6,303	김해시					
22	신용리	466	전	5,508	5,508	김해시					
23	신용리	717	구	2,659	229	농림축산식품부					
24	신용리	473	전	155	155	송*일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25	신용리	475 - 1	유	2,213	20	농림축산식품부	***				
26	신용리	474	유	81	66	농림축산식품부					
27	신용리	718	도	481	481	국토교통부					
28	신용리	산38 - 2	도	5,496	740	국토교통부					
29	신용리	472	전	666	666	김해시					
30	신용리	472 - 1	도	80	80	국토교통부					
31	신용리	472 - 2	도	8	8	국토교통부					
32	여래리	산8	임	481	481	김해시					
33	여래리	산8 - 1	도	3,016	568	국토교통부					
34	여래리	4	답	719	719	정*찬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35	여래리	4 - 1	도	567	457	국토교통부	**** *매선 ***호				
36	여래리	5	도	347	229	국토교통부					
37	여래리	8	전	156	156	김해시					
38	여래리	9 - 2	도	2,397	1,025	국토교통부					
39	여래리	884	도	47	47	국토교통부					
40	여래리	11	답	664	664	김해시					
41	여래리	43 - 1	도	2,645	756	국토교통부					
42	여래리	884 - 1	도	94	94	김해시					
43	여래리	42 - 1	답	766	766	김해시					
44	여래리	42 - 7	답	147	16	김해시					
45	여래리	42 - 6	답	268	268	김해시					
46	여래리	884 - 2	도	8	8	국토교통부					

##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여래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여래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6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산3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여래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여래공원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

시설명	도시계획시설 결정(㎡)		금회시행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근린공원 (여래공원)	237,667	237,623	101,370	101,349	김해시 고시 제2022-216호 (2022.07.22)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합계 (㎡)	용 도 별				
		도로 및 광장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기타 및 녹지
기정	101,370	5,357	2,139	25,959	652	67,263
변경	101,349	5,357	2,139	25,959	652	67,24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성 명 ─ 기정 : 김해시장(도시계획과장)  
└ 변경 : 김해시장(공원녹지과장)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5. 사업기간 : 2020.05.29. ~ 2023.05.28.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불임
7. 실시계획(변경) 신청사유
  -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T.055-330-3595)에 비치】

※ 토지조사서(기정)

이전면적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리·동	지 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1	여래리	1		전	195.00	195.00	배*조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			
2	여래리	3	- 1	전	516.00	309.00	심*술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			
3	여래리	10		답	1,134.00	129.00	김해시				
4	여래리	산4	- 2	임	760.00	301.00	김해시				
5	여래리	산4	- 3	임	1,219.00	1,193.00	김해시				
6	여래리	산5		임	22,512.00	20,786.00	기획재정부				
7	신용리	465		전	1,107.00	1,107.00	김해시				
8	신용리	산32	- 1	임	20,132.00	20,132.00	김해시				
9	신용리	산33		임	9,322.00	9,322.00	김해시				
10	신용리	산34		임	397.00	397.00	구*석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			
11	신용리	산35		임	6,645.00	6,627.00	김해시				
12	신용리	산36	- 1	임	26,876.00	25,468.00	김해시				
13	신용리	산36	- 2	임	3,570.00	987.00	김해시				
14	신용리	산36	- 3	임	6,446.00	143.00	김해시				
15	신용리	산36	- 4	임	9,521.00	9,521.00	김해시				
16	신용리	산36	- 5	임	5,455.00	4,253.00	김해시				
17	신용리	산36	- 7	임	198.00	103.00	김해시				
18	신용리	산37		임	397.00	397.00	곽*환	창원시 대산면 제동리			

※ 토지조사서(변경)

이전면적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리·동	지 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1	여래리	1		전	195.00	195.00	김해시				
2	여래리	3	- 1	전	516.00	309.00	김해시				
3	여래리	10		답	1,134.00	129.00	김해시				
4	여래리	산4	- 2	임	760.00	301.00	김해시				
5	여래리	산4	- 3	임	1,219.00	1,193.00	김해시				
6	여래리	산5		임	20,765.00	20,765.00	기획재정부				
7	신용리	465		전	1,107.00	1,107.00	김해시				
8	신용리	산32	- 1	임	20,132.00	20,132.00	김해시				
9	신용리	산33		임	9,322.00	9,322.00	김해시				
10	신용리	산34		임	397.00	397.00	구*석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			
11	신용리	산35		임	6,645.00	6,627.00	김해시				
12	신용리	산36	- 1	임	26,876.00	25,468.00	김해시				
13	신용리	산36	- 2	임	3,570.00	987.00	김해시				
14	신용리	산36	- 3	임	6,446.00	143.00	김해시				
15	신용리	산36	- 4	임	9,521.00	9,521.00	김해시				
16	신용리	산36	- 5	임	5,455.00	4,253.00	김해시				
17	신용리	산36	- 7	임	198.00	103.00	김해시				
18	신용리	산37		임	397.00	397.00	곽*환	창원시 대산면 제동리			

## 김해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고시

1. 김해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 4. 6.

### 김 해 시 장

1.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
  - 주거지와 공장, 제조업소 등의 입지 분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함
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내용(자세한 내용은 관계도서 참조)
  - 위치 : 관동동, 삼방동, 내동, 풍유동, 흥동, 전하동, 봉황동, 부원동 삼정동, 어방동, 안동, 지내동, 불암동, 진영읍, 상동면,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일원
  - 면적 : 8,624,323㎡ → 26,300,868㎡ (증, 17,676,545㎡)
3. 성장관리계획 수립 내용(자세한 내용은 관계도서 참조)
  - 다.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 자세한 내용은 관계도서 참조
    -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구역별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성장관리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및 별지서식
4. 성장관리계획 통합지침 : 시청 홈페이지 도시계획과 자료실에 게재
5. 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도면 : 시청 홈페이지 도시계획과 자료실에 게재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도시계획과(☎055-330-4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고시 제2023-96호

## 김해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6일

김 해 시 장

1. 김해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조서 : 붙임
2. 실효일자
  - 가. 2021. 08. 09. : (진영읍)소로2-8호선
  - 나. 2021. 12. 25. : (부곡동)중로1-155호선, (진영읍)중로2-4호선
  - 다. 2022. 06. 24. : (진례면)중로2-7호선
  - 라. 2023. 04. 09. : (풍유동)자동차정류장
  - 마. 2023. 04. 17. : (진례면)중로3-1호선, 소로1-9호선, 소로2-45호선, 소로2-46호선, 소로2-51호선, 소로2-56호선, 소로2-60호선
3. 실효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
4. 실효 및 지형도면 : 생략(김해시 도시계획과 비치)
5. 관계도서는 김해시 도시계획과(☎ 055-330-35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 김해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조사

도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폐지	중로	3	1	12	국지 도로	361	시례리 450-1	소3-96	일반 도로	-	2003.04.17	실효
폐지	소로	1	9	10	국지 도로	247	대3-1	소2-43	일반 도로	-	2003.04.17	실효
폐지	소로	2	45	8	국지 도로	378	송정리183	송정리 330-4	일반 도로	소 1-39	2003.04.17	실효
폐지	소로	2	46	8	국지 도로	128	중2-7	송정리 254-40	일반 도로	-	2003.04.17	실효
폐지	소로	2	51	8	국지 도로	428	대3-5	소2-45	일반 도로	-	2003.04.17	실효
폐지	소로	2	56	8	국지 도로	39	중2-4	소2-60	일반 도로	-	2003.04.17	실효
폐지	소로	2	60	8	국지 도로	249	대3-3	중1-1	일반 도로	-	2003.04.17	실효
폐지	중로	1	155	20	주간선도 로	1,08 1	중2-54	광3-3-1	일반 도로	-	1993.02.27	실효
기정	중로	2	4	15 ~18	보조간선 도로	846	중1-34	소1-1	일반 도로	-	1990.09.21	미집행구간 실효
변경	소로	1	63	10 ~15	보조간선 도로	397	소2-147	소1-1	일반 도로	-	1990.09.21	
변경	소로	2	147	8	보조간선 도로	413	소1-63	진영리 625-1	일반 도로	-	1990.09.21	
기정	중로	2	7	15	보조간선 도로	258	대3-5-1	중2-4	일반 도로	-	2001.07.04	미집행구간 실효
변경	소로	3	97	4~6	보조간선 도로	258	대3-5-1	중2-4	일반 도로	-	2001.07.04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181	중2-8	소1-1	일반 도로	-	1986.03.31.	미집행구간 실효
변경	소로	3	83	4	국지 도로	66	소1-1	여래리 741-1	일반 도로	-	1986.03.31.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 3-1호선	-	■ 실효	■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
소로 1-9호선	-	■ 실효	■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
소로 2-45호선	-	■ 실효	■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
소로 2-46호선	-	■ 실효	■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
소로 2-51호선	-	■ 실효	■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
소로 2-56호선	-	■ 실효	■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
소로 2-60호선	-	■ 실효	■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
중로 1-155호선	-	■ 실효	■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실시계획 실효(사업기간 경과)됨에 따라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실효
중로 2-4호선	소로 1-63호선	■ 미집행구간(폭원,연장) 실효 - 폭원 : 15~18m ⇒ 10~15m - 연장 : 846m ⇒ 397m - 면적 : 13,076㎡ ⇒ 4,277㎡ (감 8,799㎡)	■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실시계획 실효(사업기간 경과)됨에 따라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미집행구간 실효
	소로 2-147호선	■ 미집행구간(폭원,연장) 실효 - 폭원 : 15~18m ⇒ 8m - 연장 : 846m ⇒ 413m - 면적 : 13,076㎡ ⇒ 3,378㎡ (감 9,698㎡)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7호선	소로 3-97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집행구간(폭원) 실효</li> <li>- 폭원 : 15m ⇒ 4~6m</li> <li>- 연장 : 258m</li> <li>- 면적 : 3,940㎡ ⇒ 1,489㎡ (감 2,45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실시계획 실효(사업기간 경과)됨에 따라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미집행구간 실효</li> </ul>
소로 2-8호선	소로 3-83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집행구간(폭원,연장) 실효</li> <li>- 폭원 : 8m ⇒ 4m</li> <li>- 연장 : 181m ⇒ 66m</li> <li>- 면적 : 1,500㎡ ⇒ 264㎡ (감 1,23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실시계획 실효(사업기간 경과)됨에 따라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미집행구간 실효</li> </ul>

**자동차정류장**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3	자동차 정류장	물류 터미널	풍유동 203-3번지 일원	29,170	감)29,170	-	2003.4.9.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	자동차정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li> </ul>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2, 소로1-36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2, 소로1-3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6일

김 해 시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1236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2, 소로1-36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국립 김해 숲체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길이(m)	폭원(m)	길이(m)	폭원(m)	면적(㎡)	
중로 3-12	123	12~16	123	12~16	1,754	최초결정일 김고 제2021-358호 (2021.10.8.).
소로 1-36	1,457	10~24	1,457	10~24	22,949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시장(도로과장)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 사업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 ~ 2025. 12. 31.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
- 실시계획(변경) 신청사유
  - 국립 김해 숲체원이 조성됨에 따라 주민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진입도로 개설
-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T.055-330-3596)에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종로 3-12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상동면 대감리	939	답	1,036	3		경상남도					
2	상동면 대감리	939-1	천	81	9		경상남도					
3	상동면 대감리	1190-50	답	344	134		경상남도					
4	상동면 대감리	1190-49	제	322	108		국(국토교통부)					
5	상동면 대감리	1190-39	천	3,364	134		국(국토교통부)					
6	상동면 대감리	921-1	천	388	234		국(국토교통부)					
7	상동면 대감리	922-9	천	58	21		경상남도					
8	상동면 대감리	1236-4	구	164	56		국(국토교통부)					
9	상동면 대감리	1235-2	도	76	45		국(국토교통부)					
10	상동면 대감리	927-22	답	517	464		경상남도					
11	상동면 대감리	927-3	답	108	20	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666번길					
12	상동면 대감리	927-2	천	55	16	유**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666					
13	상동면 대감리	927-24	천	17	17		경상남도					
14	상동면 대감리	927-8	천	245	111	유**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666					
15	상동면 대감리	927-10	천	12	12		경상남도					
16	상동면 대감리	927-5	천	95	41	강**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17	상동면 대감리	926-1	장	391	4	강**	경상남도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8	상동면 대감리	1190-5	구	56	1		국(국토교통부)					
19	상동면 대감리	1190-34	천	95	1		경상남도					
20	상동면 대감리	1237-1	도	58	37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21	상동면 대감리	932-1	천	24	1		경상남도					
22	상동면 대감리	1190-25	천	111	28		국(국토교통부)					
23	상동면 대감리	927-11	천	193	128		경상남도					
24	상동면 대감리	927-18	천	66	4		경상남도					
25	상동면 대감리	927-17	도	12	3		경상남도					
26	상동면 대감리	927-21	천	21	21		경상남도					
27	상동면 대감리	927-23	도	96	39		경상남도					
28	상동면 대감리	927-20	천	59	56		경상남도					
29	상동면 대감리	927-9	천	34	6		경상남도					
합계		29필지		8,098	1,75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소로 1-36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점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상동면 대감리	927-23	도	96	34		경상남도					
2	상동면 대감리	927-20	천	59	3		경상남도					
3	상동면 대감리	927-9	천	34	28		경상남도					
4	상동면 대감리	927-5	천	95	32	강**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5	상동면 대감리	926-1	장	391	146	강**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6	상동면 대감리	925-3	도	106	11	대**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7	상동면 대감리	924-1	도	26	25	정**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김해시	가천		
8	상동면 대감리	924-2	도	10	3		김해시					
9	상동면 대감리	923-2	대	875	166	정**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10	상동면 대감리	923-3	도	41	38	정**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1	상동면 대감리	905-3	천	605	138	용***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12	상동면 대감리	913	전	370	17	정**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3	상동면 대감리	912	전	807	159	김**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4	상동면 대감리	911	장	902	1	정**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15	상동면 대감리	910-7	도	25	10	정**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6	상동면 대감리	910	장	398	39	정**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7	상동면 대감리	910-6	전	172	64	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66		상동면 상동동 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로 570	근저권	
									상동면 상동동 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로 570	지상권	
18	상동면 대감리	908-4	임	4,189	512	김**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9	상동면 대감리	908-5	임	153	81	김**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20	상동면 대감리	908-2	임	544	247	용***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21	상동면 대감리	908-1	임	33,704	2,112	신**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543번길					
22	상동면 대감리	928-9	천	38	1	신**	대구 서구 원대동1가		상동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571 (매리지점)	근저권	
23	상동면 대감리	928-8	천	95	29	신**	대구 서구 원대동1가		상동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571 (매리지점)	근저권	
24	상동면 대감리	928-5	천	32	26		경상남도					
25	상동면 대감리	927-4	도	62	23		경상남도					
26	상동면 대감리	926-3	임	334	70		김해시					
27	상동면 대감리	1235	도	1,299	61		국(국토교통부)					
28	상동면 대감리	926-2	도	119	1		김해시					
29	상동면 대감리	925-4	도	50	30	대**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30	상동면 대감리	925-1	임	231	61	대**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31	상동면 대감리	1236	구	16,391	710		국(국토교통부)					
32	상동면 대감리	909	전	645	187	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66		상동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570	근저권	
									상동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570	지상권	
33	상동면 대감리	908	천	536	184	정**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34	상동면 대감리	1152-1	임	11,184	1,003	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66		국	산림청	환매특약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을지로79 (을지로2가) (동마산지점)	근저권	
35	상동면 대감리	1152-2	임	11,185	922	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66		국	산림청	환매특약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을지로79 (을지로2가) (동마산지점)	근저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36	상동면 대감리	1153-1	임	15,000	1,223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6	국	산림청	환매특약	
						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66	3/6				
						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66	1/6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 (을지로2가) (동마산지점)	근저당권	
37	상동면 대감리	1146-4	답	190	50	김**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38	상동면 대감리	1146-3	잡	223	27	김**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39	상동면 대감리	1153	답	238	6	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작로					
40	상동면 대감리	1154	답	1,350	8	채**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41	상동면 대감리	1154-2	답	136	75	김**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42	상동면 대감리	1153-2	임	87,541	5,639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496163.8 /1540875	국	산림청	환매특약	
						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66	770437.5 /1540875				
						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66	256812.5 /1540875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 (을지로2가) (동마산지점)	근저당권	
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156.	17461.2 /1540875										
43	상동면 대감리	1154-4	답	180	55	김**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44	상동면 대감리	1158	임	446	94	김**	부산 사상구 학장동					
45	상동면 대감리	1158-1	임	1,381	262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35		국	산림청	환매특약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상동농협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570	근저당권	
									상동농협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570	지상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관리종류	
46	상동면 대감리	1171	전	1,983	51	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543번길	16/25				
						최**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121.	3/25				
						최**	부산광역시 북구 함박봉로 26.	3/25				
						최**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 168번길	3/25				
47	상동면 대감리	1172	전	1,177	126	남**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473번길	551 /1101				
						한**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375번길	550 /1101	상동농 협 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570	근저당	
48	상동면 대감리	산138-1	임	40,363	1,183	전**	경상남도 양산시 장흥4길					
49	상동면 대감리	산138-6	임	102,842	5,071	이**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940 /2585				
						정**	부산 금정구 부곡동	235 /2585				
						정**	부산 금정구 부곡동	1269 /2585				
						최**	부산광역시 북구 사랑로	141 /2585				
50	상동면 대감리	1175	전	387	96	황**	김해시 봉황동					
51	상동면 대감리	산138-3	임	900,618	1,389		국(산림청)					
52	상동면 대감리	1182	임	387	88	최**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543번길					
53	상동면 대감리	1184-2	답	139	106	정**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신**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김**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정**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허**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정**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의종 류	
53 (계 속)	상동면 대감리	1184-2	답	139	106	김**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장**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이**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이**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신**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정**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조**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김**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김**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김**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한**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정**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서**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김**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이**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허*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박**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정**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박**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이**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53 (계속)	상동면 대감리	1184-2	답	139	106	박**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오**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장**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신**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신**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정**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이**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김**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신**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조**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신**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최**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최**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김**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서***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이**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박**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신**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장**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조**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53 (계속)	상동면 대감리	1184-2	답	139	106	안**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정**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박**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남**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정**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허**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신**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이**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정**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1/55				
54	상동면 대감리	1184-1	답	96	64	백**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55	상동면 대감리	1184	답	734	162	용***	김해군 상동면 대감리					
합계		55필지		1,241.214	22,949							



**김해시 공고 제2023-1629호**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의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4월 06일**

**김 해 시장**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요 내용**

- 1. 공람기간: 2023. 04. 06. ~ 2023. 05. 08. (30일 이상)
- 2. 공람장소: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055-330-3664)
- 3.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 정비계획(안)

-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 나. 정비구역 및 면적

지정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규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	-	증)12,346	12,346	

- 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공람도서 참조
- 라.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람도서 참조
-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공람도서 참조
-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공람도서 참조
- 사.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공람도서 참조
-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공람도서 참조
- 자.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차. 기타: 공람도서 참조

- 4. 의견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 5. 공람도서: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끝”

**□ 주민설명회 개최**

- 1. 일 시 : 2023. 04. 13.(목) 14:00
- 2. 장 소 : 김해시 삼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255번길 12)
- 3. 참석자 : 김해 삼방지구 정비구역(안) 토지 등 소유자 및 주민
- 4. 내 용 :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설명

●김해시 공고 제2023-1649호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임대조건) 현황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변경 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 조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4일

김해시장

1. 2023년 1분기 임대차계약(임대조건) 신고 현황

임대시작일	임대주택 도로명주소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20230101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번길 * ***실 (부원동)	5,000,000	350,000
20230101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 ***동 ***호 (부원동, 부원역그린코아더센텀)	10,000,000	420,000
20230101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 ***호	3,000,000	350,000
20230102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53,000,000	403,000
20230102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3,000,000	296,000
20230102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 ***번길 ** ***호(전하동)	85,000,000	130,000
20230102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73,000,000	94,000
20230102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73,000,000	349,000
20230102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로 ** ***동 ****호 (무계동, 이편한세상장유2차)	150,000,000	0
20230103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8,000,000	322,000
20230103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73,000,000	94,000
20230104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번길 *_* ***실 (부원동)	3,000,000	270,000
20230104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73,000,000	94,000
20230104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 *_* ***실 (전하동)	2,000,000	210,000
20230104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로 ** ***실 (대청동)	10,000,000	570,000
20230104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번길 ** ***호 (대청동)	3,000,000	380,000
20230105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8,000,000	322,000
20230105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 ***번길 ** ***호(전하동)	3,000,000	350,000
20230105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3,000,000	296,000
20230106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번길 ** ***호 (대청동)	3,000,000	345,000
20230109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번길 *_* ***실 (삼계동)	2,000,000	310,000
20230110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 IS PLAZA 오피스텔동 ****호 (부원동)	84,000,000	0
2023011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번길 *_* ***실	85,000,000	50,000
20230110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번길 ** ***동 ***호 (어방동, 어방2주공아파트)	45,000,000	0
20230110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번길 *_* ***실 (부원동)	3,000,000	260,000
20230111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로***번안길 *_* ***호실 (주촌면 천곡리)	5,000,000	550,000
20230111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73,000,000	94,000
20230111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번길 ** ***실 (외동)	4,000,000	280,000
20230111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 ***동 ***호 (부원동)	3,000,000	450,000

20230112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73,000,000	349,000
20230112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번길 ** ***실 (부원동)	3,000,000	295,000
2023011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번길 ** ***호	2,000,000	280,000
20230113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3,000,000	296,000
20230113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8,000,000	322,000
20230113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번길 ** ***호 (대청동)	4,000,000	342,000
20230114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번길 **_* 동 ***호 (외동, 신영아트빌)	15,000,000	350,000
20230114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 ***동 ***호 (외동, 성원아파트)	50,000,000	92,830
20230114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번길 * ***실 (삼방동)	3,000,000	300,000
2023011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 ***동 ***호 (부원동, 부원역 그린코아 더 센텀)	4,000,000	420,000
20230115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번길 ** ***호실 (부원동)	10,000,000	470,000
20230115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번길 **_* ***호 (무계동)	10,000,000	270,000
20230116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로***번안길 **_* ***호실 (주촌면 천곡리)	20,000,000	400,000
20230116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번길 **_* ***실 (부원동)	3,000,000	280,000
20230116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73,000,000	94,000
20230116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번길 *_** ***실 (삼계동)	5,000,000	347,600
20230116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번길 *_** ***실	3,000,000	290,000
20230117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번길 ** *층 ***실	500,000	250,000
20230117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번길 * ***실 (부원동)	3,000,000	320,000
20230117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번길 * ***실 (부원동)	47,000,000	50,000
20230117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번길 ** ***호 (대청동)	3,000,000	350,000
20230118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번길 ** ***호실 (부원동)	5,000,000	370,000
20230118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3,000,000	296,000
20230120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로***번안길 **_* ***호실 (주촌면 천곡리)	10,000,000	500,000
2023012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63,000,000	121,000
2023012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8,000,000	322,000
2023012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율하동, 율상마을모아미래도6단지)	257,000,000	0
20230121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 ***동 ***호 (외동, 성원아파트)	45,000,000	212,400
20230123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번길 **_* ***실	600,000	270,000
20230124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로***번안길 **_* ***호실 (주촌면 천곡리)	10,000,000	500,000
20230125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로***번안길 **_* ***호실 (주촌면 천곡리)	10,000,000	500,000
20230125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 ***실 (안동)	3,000,000	290,000
20230125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로***번길 **_* 00근.생주택동 (내덕동)	3,000,000	735,000
20230125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53,000,000	403,000
20230125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 ***동 ***호 (삼계동, 화정마을6단지부영아파트)	85,000,000	0
20230126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 ***동 ***호 (삼방동, 동성아파트)	7,000,000	350,000
20230126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번길 *_** ***호 (외동)	3,000,000	290,000
20230127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번길 ** ***동 ****호 (무계동, 석봉마을 부영아파트)	73,500,000	0

20230128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울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8,000,000	322,000
20230128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_* ***실 (삼방동)	2,000,000	290,000
20230129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번길 **_* ***실	2,000,000	330,000
20230130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번길 ** ***호실 (부원동)	5,000,000	400,000
20230130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번길 * ***실 (대성동)	1,500,000	270,000
2023013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울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8,000,000	322,000
20230130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번길 ** ***실 (동상동, 가야캐슬)	50,000,000	220,000
20230130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번길 ** ***실 (동상동, 가야캐슬)	30,000,000	164,000
20230131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번길 ** ***호 (내동)	3,000,000	315,656
20230131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중앙로 ** ****호 (삼계동)	2,000,000	200,000
20230131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 *** 제***동 ***호 (외동, 한국1차아파트)	10,000,000	440,000
20230201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로***번안길 **_* ***호실 (주촌면 천곡리)	5,000,000	400,000
20230201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로***번안길 **_* ***호실 (주촌면 천곡리)	20,000,000	250,000
20230201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번길 ** ****호 (삼계동)	3,000,000	395,000
20230201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번길 ** ***호 (삼계동)	3,000,000	365,000
2023020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 ***동 ***호 (마루애아파트)	10,000,000	380,000
2023020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 ***동 ****호 (마루애아파트)	5,000,000	395,000
20230201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번길 ** ***호 (내동)	3,000,000	300,000
2023020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_* ***호	5,000,000	370,000
20230201	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번길 *_* ***호실 (내동)	85,000,000	150,000
20230201	경상남도 김해시 변화*로 ** (삼문동)	20,000,000	0
20230201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번길 * ***실 (부원동)	3,000,000	210,000
2023020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번길 **_* 진영썬빌 ****호 (진영썬빌)	10,000,000	500,000
20230202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 ***실 (삼방동)	1,000,000	280,000
20230202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번길 **_* ****호 (삼방동)	17,000,000	459,000
20230203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번길 *_* ***실	3,000,000	300,000
20230203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번길 ** ****실 (어방동)	3,000,000	350,000
20230203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번길 **_* ***실 (부원동)	2,000,000	280,500
20230204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번길 **_* ***실 (내동)	5,000,000	350,000
20230204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번길 **_* 동 ***호 (외동, 신영아트빌)	5,000,000	300,000
20230204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번길 **_* ***실 (내동)	5,000,000	350,000
20230204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번길 **_* ***실 (부원동)	3,000,000	290,000
20230204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번길 ** ****실 (외동)	5,000,000	390,000
20230205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울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8,000,000	322,000
20230206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 ***호 (삼방동, 세화빌라)	2,000,000	330,000
20230206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울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8,000,000	322,000
20230206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_* ***호	5,000,000	384,000
20230207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 ***실 (삼방동)	2,000,000	320,000
20230207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 ***동 ***호 (마루애아파트)	10,000,000	325,000
20230207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울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73,000,000	94,000
20230208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울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53,000,000	147,000
20230208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번길 * ***실 (대성동)	2,000,000	290,000
20230208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울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73,000,000	94,000

20230209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번길 ** ***호 (대청동)	3,000,000	380,000
20230209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 ***동 ***호 (삼계동, 화정마을6단지부영아파트)	5,000,000	470,000
20230210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번길 ** ***호 (내동)	5,000,000	316,146
2023021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 ***동 ****호 (마루애아파트)	10,000,000	345,000
2023021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윌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73,000,000	94,000
2023021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윌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3,000,000	296,000
20230210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_* ***실 (삼방동)	2,000,000	250,000
20230210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번길 *_* ***실 (외동)	1,000,000	320,000
20230210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호	3,000,000	400,000
20230211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번길 ** ***호 (외동)	5,000,000	340,000
20230211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번길 *_* ***실 (삼방동)	2,000,000	290,000
20230211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번길 * ***호실 (삼방동)	4,000,000	290,000
20230212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 ***실 (삼방동)	2,000,000	300,000
20230212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번길 *_* ***실 (삼방동)	3,000,000	320,000
20230212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번길 * ***실 (삼방동)	3,000,000	300,000
20230213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_* ***실 (삼방동)	5,000,000	280,000
20230213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윌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8,000,000	322,000
20230213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윌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53,000,000	147,000
20230213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윌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53,000,000	147,000
20230214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 ***동 ***호 (마루애아파트)	10,000,000	345,000
20230214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 ***동 ****호 (마루애아파트)	20,000,000	280,000
20230214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_* ***실 (삼방동)	2,000,000	280,000
20230215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 ***동 ****호 (마루애아파트)	73,500,000	0
20230215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윌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8,000,000	322,000
20230215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_* ***실 (삼방동)	2,000,000	280,000
20230215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_* ***실 (삼방동)	2,000,000	260,000
20230215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번길 ** ***실 (외동)	5,000,000	300,000
20230215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번길 * 동 ***호 (내동)	10,000,000	560,000
20230215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번길 ** ****동 ***호 (무계동, 석봉마을)	10,000,000	408,000
20230216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번길 *_* ***실 (삼방동)	3,000,000	270,000
20230216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윌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3,000,000	296,000
20230217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로***번안길 **_* ***호실 (주촌면 천곡리)	5,000,000	400,000
20230217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로***번안길 **_* ***호실 (주촌면 천곡리)	20,000,000	400,000
20230217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번길 ** ***동 ***호 (무계동, 석봉마을 부영아파트)	1,000,000	400,000
20230217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윌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73,000,000	349,000
20230217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윌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3,000,000	296,000
20230217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번길 * 동 ***호 (내동)	17,000,000	300,000
20230217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번길 * 동 ***호 (내동)	17,000,000	300,000
20230217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번길 * 동 ***호 (내동)	17,000,000	50,000
20230217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윌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8,000,000	322,000

20230217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번길 * *동 ***호 (내동)	17,000,000	430,000
20230217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번길 * *동 ***호 (내동)	17,000,000	80,000
20230217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번길 * *동 ***호 (내동)	17,000,000	0
20230217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번길 ** *동 ***호(삼정동, 서남삼송빌라)	60,000,000	0
20230218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번길 **-* ***실 (외동)	2,000,000	300,000
20230219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번길 **-* ***실	3,000,000	320,000
20230219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로***번안길 **-* ***호실 (주촌면 천곡리)	20,000,000	250,000
20230219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번길 *_** *동 ***호 (삼방동, 남부아카데미빌라)	3,000,000	280,000
20230219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번길 *_** ***실 (삼방동)	2,000,000	290,000
20230219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번길 *_** ***실 (내동)	5,000,000	500,000
20230219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번길 ** ***호 (대청동)	3,000,000	370,000
2023022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튜디오아파트)	53,000,000	403,000
2023022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튜디오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0220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번길 *_** ***실 (삼방동)	2,000,000	290,000
2023022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튜디오아파트)	98,000,000	322,000
20230220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번길 ** ***호 (대청동)	3,000,000	370,000
20230222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 ***실 (안동)	17,000,000	260,000
20230222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중앙로 ** ****호 (삼계동)	3,000,000	64,000
20230222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튜디오아파트)	98,000,000	322,000
20230222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튜디오아파트)	73,000,000	94,000
20230223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번길 ** ***호 (삼정동)	17,000,000	300,000
20230223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번길 **-* *동 ***호 (삼방동, 파라다이스빌라)	3,000,000	300,000
20230223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튜디오아파트)	98,000,000	322,000
20230223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번길 * ***호실 (삼방동)	3,000,000	290,000
20230223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번길 * ***호실 (삼방동)	2,000,000	290,000
20230224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로***번안길 **-* ***호실 (주촌면 천곡리)	5,000,000	400,000
20230224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 ***실 (삼방동)	3,000,000	280,000
20230224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번길 **-* ***실	3,000,000	300,000
20230224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번길 * ***실 (삼방동)	5,000,000	400,000
20230224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번길 * ***호실 (삼방동)	5,000,000	290,000
20230225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번길 ** ***호 (외동)	2,000,000	150,000
20230225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번길 *_** ***실 (삼방동)	3,000,000	280,000
20230225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번길 *_** ***실 (삼방동)	2,000,000	260,000
20230225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번길 *_** ***실 (내동)	5,000,000	520,000
20230226	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번길 * ***실 (외동)	5,000,000	121,458
20230226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튜디오아파트)	98,000,000	322,000
20230227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번길 **-* ***실 (내동)	75,000,000	150,000
20230227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튜디오아파트)	78,000,000	375,000
20230227	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번길 **-* ***실 (내동)	2,000,000	400,000
20230227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 ***실 (삼방동)	2,000,000	290,000
20230227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번길 * ***실 (삼방동)	3,000,000	400,000
20230227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번길 ** ***호 (대청동)	5,000,000	360,000



20230228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번길 ** ***호 (내동)	3,000,000	236,363
20230228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 ***동 ****호 (마루애아파트)	5,000,000	450,000
20230228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73,000,000	94,000
20230228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번길 ** ***호 (대청동)	5,000,000	350,000
2023030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번길 ** *동 ***호 (한림면 장방리)	5,000,000	450,000
20230301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번길 ** ***호 (외동)	10,000,000	230,000
20230301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 ***호 (삼계동)	30,000,000	380,000
20230301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 ***동 ***호 (외동, 뜨란채아파트)	5,000,000	500,000
20230301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번길 * ***실 (부원동)	10,000,000	230,000
2023030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 ** ***호	3,000,000	210,000
20230301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번길 ** ***호 (삼계동)	3,000,000	377,000
20230301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번길 *.* ** ***호 (외동)	3,000,000	290,000
20230302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3,000,000	296,000
20230302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 IS PLAZA 오피스텔동 ***호 (부원동, IS PLAZA 오피스텔)	5,000,000	350,000
20230302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번길 **.* ** ***실 (부원동)	2,000,000	300,000
20230303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번길 ** *동 ***호 (한림면 장방리)	3,000,000	450,000
20230304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로***번안길 **.* ** ***호실 (주촌면 천곡리)	10,000,000	500,000
20230304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번길 ** ***호 (대청동)	3,000,000	360,000
20230305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번길 **.* ** ***실 (대성동)	17,000,000	490,000
20230306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 ** ***실 (삼방동)	2,000,000	300,000
20230306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58,000,000	429,000
20230306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번길 ** ***호 (대청동)	17,000,000	248,000
20230309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번길 ** ***호 (외동)	10,000,000	240,000
20230309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번길 **.* ** ***실 (외동)	2,000,000	315,000
2023031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3,000,000	296,000
2023031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3,000,000	296,000
20230311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 ***동 ***호 (외동, 성원아파트)	60,000,000	101,600
20230311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 IS PLAZA 오피스텔동 ***호 (부원동)	5,000,000	400,000
20230311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번길 ** ***호 (대청동)	3,000,000	320,000
20230311	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번길 * ***동 ***호 (대청동, 갑오마을 주공2단지)	15,000,000	420,000
20230312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 IS PLAZA 오피스텔동 ****호 (부원동)	3,000,000	378,000
20230312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번길 ** ***호 (대청동)	4,000,000	360,000
20230313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 ** ***실 (삼방동)	3,000,000	265,000
20230314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번길 ** ****호 (대청동)	5,000,000	365,000
20230315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3,000,000	296,000
20230315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번길 ** ***호 (대청동)	3,000,000	345,000
20230319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3,000,000	296,000
2023032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올하리슈빌더스테리어파트)	98,000,000	322,000
20230320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번길 **.* ** ***실	3,000,000	320,000
20230321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번길 ** ***호 (대청동)	3,000,000	390,000

20230323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번길 ** ***호 (삼정동)	17,000,000	300,000
20230323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튜디오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0325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번길 ** ***호 (외동)	5,000,000	320,000
20230326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 ***동 ****호 (외동, 성원아파트)	20,000,000	319,500
20230327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튜디오아파트)	98,000,000	322,000
20230327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 ***동 ***호 (외동, 성원아파트)	50,000,000	214,100
20230330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튜디오아파트)	93,000,000	296,000
20230331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장유동, 김해율하리슈빌더스튜디오아파트)	98,000,000	322,000

※ 문의처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담당자 ☎ 055-330-4318



## 김해도시계획시설(시설:완충녹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김해도시계획시설(시설:완충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6일

###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진영읍 여래리 89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시설:완충녹지)사업
  - 사업의 명칭 : 진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결정(m <sup>2</sup> )	금회 시행규모(m <sup>2</sup> )	비 고
완충녹지 5-1	179,841	6,523	최초결정일 1986.4.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해시장(건설과장)
  - 주소 : 김해시 김해대로2401(부원동 623)
5. 사업시행기간 : 2022.1.14. ~ 2023.12.23.
6. 준 공 일 : 2022. 11. 23.
7. 문 의 처 :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6), 건설과((☎055-330-3794)